

# 2026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지원사업 사업신청 FQ&A

## Q 신청서의 “산업위기지역 업체 구분” 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나요?

- A
- **주된 산업 영위기업** : 신청기업이 속한 산업분야가 공고상 주된 산업 영위기업으로 인정하는 지역별 산업분류코드에 해당할 경우
    - \* 공장등록증명서의 등록내용-공장의 업종(분류번호) 확인(다음 페이지 참고)
  -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기업** : 신청기업은 주된 산업 영위기업으로 인정하는 지역별 산업분류코드에 해당하지 않지만, 거래업체가 주된 산업 영위기업으로 인정하는 산업분류코드에 해당할 경우
    - \* 거래업체의 공장등록증명서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거래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을 반드시 추가로 제출

# 산업위기지역 업체구분별 인정 조건

- ★ **주된 산업 영위기업** 인정 조건 : 지역별 공장등록증명서상 등록내용의 “공장의 업종(분류번호)” 가 아래 표의 코드 중 한 개 이상 일치할 경우 신청 가능
- ★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기업** : 거래업체가 주된 산업 영위기업으로 인정하는 산업 분류코드 중 한 개 이상 일치할 경우 신청 가능

	여수	포항	서산	광양
표준산업분류 (공고)	▲C20(화학물질및화학 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	▲C24(제1차금속제조업)	▲C20(화학물질및화학 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	▲C24(제1차금속제조업)
인정되는 공장등록증명서상 산업분류 코드	20129, 20121, 20122, 20129, 20129, 20119, 20131, 20111, 20112, 20132, 20312, 20311,20313, 20201, 20202, 20203, 20321, 20321,20322, 20322, 20413, 20413, 20411, 20411,20412, 20422, 20422, 20423, 20421, 20424, 20424, 20493, 20499, 20492, 20491, 20494, 20499, 20495, 20501, 20502, 20494	24111, 24112, 24113, 24119, 24199, 24131, 24121, 24122, 24123, 24132, 24133, 24191, 24199, 24219, 24211, 24212, 24213, 24219, 24211, 24212, 24213, 24222, 24221, 24229, 24290, 24311, 24312, 24321, 24329, 24329	20129, 20121, 20122, 20129, 20129, 20119, 20131, 20111, 20112, 20132, 20312, 20311, 20313, 20201, 20202, 20203, 20321, 20321, 20322, 20322, 20413, 20413, 20411, 20411, 20412, 20422, 20422, 20423, 20421, 20424, 20424, 20493, 20499, 20492, 20491, 20494, 20499, 20495, 20501, 20502, 20494	24111, 24112, 24113, 24119, 24199, 24131, 24121, 24122, 24123, 24132, 24133, 24191, 24199, 24219, 24211, 24212, 24213, 24219, 24211, 24212, 24213, 24222, 24221, 24229, 24290, 24311, 24312, 24321, 24329, 24329

## Q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구분해서 작성하나요?

A

- 본 사업에선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신청을 구분해서 신청(운전자금/시설자금)
  - ★ 운전자금 : 임금, 원재료구입, 제품생산 및 판매활동 등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및 장치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단, 토지(토지매입 등), 건축(공장 설립 등) 관련 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며 해당내용 기재시 추천서 발급 불가
  - 반드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구분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임의로 한 개 사업계획서에 한꺼번에 기재시 추천서 발급 불가)
  -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신청시 신청서에 신청금액 표기

## Q 사업계획서 의무작성 분량이 있나요?

- A
- 사업계획서는 추천서 발급을 위한 평가의 기본자료로 활용
  - 분량에 대한 의무사항은 별도로 없으나 2~3페이지 이상 작성하는 것을 추천
- \* 계획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성의하게 제출할 경우 추천서 미발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 Q 사업계획서 제출 전 체크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요?

- A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작성공란은 모두 기재해야 하며, 제출 전 인감날인 스캔본으로 제출이 되었는지 확인
  - 신청서 하단에 기재된 첨부서류가 모두 첨부되었는지 확인
    - \* 신청양식의 필수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천서 발급 불가
  - 첨부서류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뒤에 양식에 맞춰 순서대로 삽입
    - \* 첨부서류 목록 : (1)사업계획서 1부, (2)확약서 1부, (3)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1부, (4)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5)기타 관련증빙
    - \*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반드시 사업계획서는 해당신청양식에 작성

## Q 첨부서류는 산업위기지역 업체 구분에 따라 어떻게 제출하나요?

- A
- **주된 산업 영위기업**과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기업** 모두 3~6번\* 첨부는 모두 제출
    - \* 3.확약서(인감날인본) / 4.법인등기부등본 / 5.사업자등록증, / 6.중소중견기업확인서
  - **주된 산업 영위기업**에 해당할 경우, 7번\*에 명시된 서류는 모두 제출
    - \* 1.공장등록증 / 2.직전회계연도 재무제표(포괄손익계산서 포함) / 3.그 외 증빙자료
  -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기업**에 해당할 경우, 8번 양식을 작성하고 필수제출서류도 함께 제출
 

특히, 거래업체의 공장등록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필수로 제출  
 해야 하며, 최근 3~5개년 대표적인 세금계산서를 연도별로 3개 이상 첨부

    - \* 필수제출서류는 8번 양식 뒤에 첨부
    - \* 필수제출서류 : 거래관계 증명이 가능한 계약서(날인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실적확인서 등